

형사사법통계의 역사와 형사정책적 활용방안*

황 지 태**

국 | 문 | 요 | 약

국가통계자료에 대한 해석과 정책적 활용은 그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그 비판에 대한 반박이라는 나선형적 순환을 통해 오류의 가능성을 점차 줄여나가는 지난한 과정이다. 그 과정을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통계 자료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불신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본고의 목적은 형사사법통계의 역사를 돌아봄으로써 현 시점에서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찰해 보는 것이다.

❖ 주제어 : 범죄, 범죄통계, 범죄통계의 역사, 형사정책, 콩도르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원 25주년기념 춘계공동학술세미나 발표문을 게재함.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조사센터장

I. 형사사법통계의 정책 활용방안과 관련해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의 의미

우리나라에서 특정한 정책의 수립 및 더 나아가 그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 등을 위해 현 시대만큼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시기는 일찍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중요성이 강조되는 본질적인 영역은 통계보다 넓은 의미로서의 정책적 판단 근거 혹은 증거(evidence)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근거들 중에서 활용이 용이한 수단으로서 현실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것이 각종 통계 수치들이나 계량화된 지표들인 탓에 통계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책 수립 등과 관련된 통계에 대한 중요성의 부각은 범죄통계 및 형사사법통계의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는 특히 그 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활용의 정도가 매우 낮은 편에 속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강조는 최근에 들어 더욱 두드러져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범죄와 형사사법통계에 대한 최근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그 강조의 정도와 형사정책에 실제로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근거 자료로서 형사사법통계의 현실 사이의 격차는 매우 커다란 실정이다. 요긴한 정책적 판단을 위한 통계자료 자체가 원천적으로 산출 불가능하거나 혹은 그런 자료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연구자들에게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잘 알려진 문제에 속한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는 통계적 근거 자료들의 활용에 대한 현 시대의 널리 퍼진 기본적인 이해방식의 문제일 수 있다. 그 문제란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 자료에 대한 맹목적 불신과 맹목적 신뢰라는 양극단의 태도이다. 필자는 전자 못지않게 후자 역시 형사사법통계의 적정하고 올바른 활용에 대한 매우 커다란 장애 요소라고 본다. 실제로 전자와 후자는 동전의 양면이다. 통계자료에 대한 해석과 정책적 활용은 그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그 비판에 대한 반박이라는 나선형적 순환을 통해 오류의 가능성을 점차 줄여나가는 지난한 과정이다. 그 과정을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특정 시점에서의 통계 자료에 대한 맹목적 신뢰는 순식간에 맹목적 불신으로 전환될 수 있다. 형사사법통계의 역사¹⁾를 돌아보

1) 본고에서는 통계기법 발달의 역사가 아니라 통계를 이용한 정책 활용의 약사에 한정하고자 한다.

는 작업의 의미는 바로 그러한 이해방식의 문제를 되짚어보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현 시점에서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찰해 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II. 근대적 통계의 발전: 국가의 체계적 수치자료 수집과 활용의 거시적 배경

방대한 양적 자료의 집적으로서의 통계의 기원은 그 자체로 그것을 통한 정책적 활용의 역사이다. 일찍이 고대 국가에서도 세금 징수와 병역 부과를 위한 근거 자료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고대 바빌론의 서기들이 과세 기록을 남긴 점토판과 고대 이집트의 각종 조사 수치 자료들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고, 신약성서²⁾는 물론 그보다 훨씬 오래된 구약성서³⁾의 곳곳에도 인구조사와 통계치의 활용에 관한 기록들이 발견된다. 고대 중국에서도 이미 은(殷)나라 때부터 세금 징수를 위한 인구조사 및 토지조사를 실시해 왔다⁴⁾. 이렇듯 통계를 국가 통치에 활용해온 역사가 오래되었고 그 기본적인 활용의 형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좀 더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정책 활용적 통계의 역사, 그 중에서도 특히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의 역사는

2) 루가복음 2장 1절-5절(“이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당시 로마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대한성서공회, 1997,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3) 출애굽기 30장 12절-15절(“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민수기 1장 2절-3절(“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이십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만한 도는 자를... 계수하되...”), 1장 20절-47절(이스라엘 지파의 병력수), 3장 14절-51절(레위지파 인원수), 28장 1절-29절(축제일의 봉헌물 일람표), 31장 32절-52절(전쟁 포획물), 사무엘 하 24장 1절-25절(다윗왕의 인구조사), 역대상 21장 1절 30절(다윗왕이 인구조사를 행한 죄), 역대 하 2장 17절(솔로몬왕의 인구조사) 등을 들 수 있다. 대한성서공회, 1997,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4) “(은나라의) 하급수령의 경우,... 3년마다 실시하는 호구 조사에 의거하여 토지대장과 호적을 작성, 관리하는 일도 맡았다”(Henri Maspero, 1927, 김선민 역, 1995, 『古代中國』: 72-73 참조, 도서출판 까치).

17세기 이후에야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 유럽에서의 과학혁명에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을 수치로 측정할 수 있다는 신념, 즉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질까지도 계량화할 수 있다는 신념을 점차 확산시켜 나아갔다. 실제로 인간의 기질은 18세기와 19세기를 거쳐 지금까지 급속히 계량화되어 왔다. 이는 단순히 머리수를 세고 그에 따라 세금을 매기거나 군사를 징발했던 고대 세계에서의 통계와는 차원이 크게 다른 것이다. 그것은 확률 이론과 결합된 통계이자, 동시에 그 이전 시대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방대한, 동시에 정기적으로 수집되는 각종의 측정 자료들을 활용한 통계이기도 하다.

정기적으로 집계되는 통계 자료의 집적은 통계적 규칙성의 발견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통계 수치에 대한 정책적 활용의 확대로 이어졌다. 17세기 영국의 존 그런트(John Graunt, 1620-1674)는 당시 작성된 런던의 사망표(bills of mortality)를 최초로 분석한 바 있다(Graunt, 1662). 사망표가 작성된 계기는 유럽의 흑사병이었다. 왕족이나 귀족들은 사망표를 통해 흑사병이 심화되고 있는지 혹은 진정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사람이 적은 곳으로 피난을 가야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런던에 흑사병이 도졌던 시기인 1603년 이후 정기적으로 작성되기 시작한 런던의 사망표를 분석하면서 그런트가 발견했던 가장 놀라운 사실은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을 제외할 경우 사망률이 일정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 사고에 의한 사망, 그리고 자살에 의한 사망의 비중이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트 이후에도 사망통계를 분석한 후학들 역시 계속해서 비슷한 경향을 파악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그러한 발견들을 토대로 보험이란 것이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으로서의 생명보험은 어느 정도 일정한 사망률 예측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⁵⁾ 영국(잉글랜드)은 해운과 무역을 위한 보험의 발상지(Hacking, 1990, 정혜경 역, 2012: 52)이기도 한데, 이는 당시 사람들이 선박 사고율 역시 어느 정도 일정하다는 사실을 대량의 통계자료를 통해 발견해온 경험

5) “1670년경에는 네덜란드 공화국의 개화된 지도자들은 국가 자원을 확충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방식인 생명연금의 판매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망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Hacking, 1990, 정혜경 역, 2012: 98) 하지만, 좀 더 체계적인 생명보험의 도입은 18세기 프랑스의 뒤빌라르(Emmanuel-Étienne Duvillard, 1775-1832)에 이르러서야 가능해졌다.

의 축적 덕택이라고 볼 수 있다.

통계적 규칙성의 발견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축적된 대량의 데이터를 전제로 한다. 통계적 데이터의 기본적인 수집 목적, 즉 징세나 징병의 목적은 고대나 근현대나 서로 유사하지만, 근대 이후의 데이터 수집은 훨씬 더 체계적이고 방대한 것이었다. 그 기본적 배경은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한 예측 필요성의 폭발적인 증가라고 할만하다. 상대적으로 폐쇄적이었던 중세사회에 비해, 근대 유럽에서는 국제 무역의 증가, 신대륙 발견, 그리고 그에 따른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 신사상의 출현 및 신사상을 토대로 한 혁명의 빈발, 덧붙여 당시 새로 태동한 근대 국가들 간의 무역 경쟁 및 전쟁 등으로 인해 정치적 예측이 필요한 영역이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달리 표현하자면, 그것은 전혀 새로운 인간 행위의 확대, 즉 모험의 증가 및 그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한 시대 상황은 확률이론 발전의 또 다른 진원지인 도박의 세계와도 매우 유사한 상황이었다.

Ⅲ. 통계를 활용한 정책수립과 국가계획에 대한 이상의 출현

존 그랜트(John Graunt)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찰스2세(Charles II, 1630-1685)를 위한 새로운 세입원 발견 목적으로 영국과 아일랜드의 인구 추산을 시도하기도 했던 윌리엄 페티(William Petty, 1623-1687)는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정부 활동은 수치 자료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페티는 수집된 수치 자료를 통해 경제와 사회를 이해하고 국가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신념을 가졌으며, 그에 관한 이론을 정치산술(Political Arithmetic)⁶⁾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Petty, 1690). 영국

6) 정치산술(Political Arithmetic)은 윌리엄 페티가 저술한 책(Petty, 1690)의 제목이기도 하다. 당시 영국에서의 정치산술이란 용어는 현재 쓰이고 있는 통계학(Statistics)에 해당된다. 현재 쓰이는 통계학이라는 말의 영어 용어인 Statistics는 근본적으로는 이탈리아(길게는 로마)에서 유래한 말이지만 하지만 현재와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독일 괴팅겐의 학자 아헨발(Gottfried Achenwall, 1719-1772)이 사용했던 용어인 Statistik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아헨발이 사용했던 용어는 통계학이 아닌 국상학(國狀學)이라고 번역되는데, 국상학이란 수량적 관찰을 통해 국가의 상태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헨발의 Statistik이란 용어를 차용한 뒤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서의 통계학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사람은 19세기 벨기에의 사회학자이자 통계학자인

에서 윌리엄 페티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현 독일 지역의 철학자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Leibniz, 1646-1716)는 1685년 무렵 신생 프로이센 정부에 중앙통계청을 설립하는 구상을 제안하였다(Hacking, 1990, 정혜경 역, 2012: 55). 라이프니츠의 목적은 페티의 목적과 대체로 유사했다.

윌리엄 페티와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가 살았던 시대는 구세대 세력과 신진 프로테스탄트 세력 사이의 백여 년 간의 전면적 무력 갈등이 양진영을 모두 지치게 만들었던 시대이자, 무력에 의한 빈번한 정권교체가 아닌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타협과 평화적 정권교체의 가능성에 대한 이상이 싹트기 시작한 시대였다. 그러한 관용과 민주적 타협의 정신은 동시대의 인물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의 사상에서도 드러난다(Locke, 1689, 공진성 역, 2013). 관용과 타협의 전제 조건은 어느 편에서도 수궁할 수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영국 청교도혁명의 지도자 크롬웰(Richard Cromwell, 1626-1712)의 군대에 가담했던 경력에도 불구하고 왕정복고(1660)로 왕위에 오른 찰스 2세를 위해 일했던 윌리엄 페티는 적어도 정부가 통치자의 변덕이나 주관적 신념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전역을 폐허로 만든 오랜 내전이 끝날 무렵에 태어났던 라이프니츠 역시 객관성과 합리성에 입각한 새로운 정부를 꿈꾸었을 만한 상황 속에서 살았다. 라이프니츠의 이상은 18세기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재위, 1713-1740) 통치 기간 이후로 프로이센에서는 어느 정도 실현되어 나갔고, 영국에서는 존 싱클레어(Sir John Sinclair, 1754-1835)가 1793년 창설한 농업위원회가 통계 부서의 성격을 겸하면서 점차 통계를 전담하는 기관의 등장으로 이어져 나갔다.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는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1706-1790)과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1826)이 통계자료를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메리카 대륙의 새로운 근대국가 탄생에 기여하도록 이끌었다. 프랑스에서는 혁명기인 1791년에 라부아지에(Antoine-Laurent Lavoisier, 1743-1794)가 통계자료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관서를 신설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으며, 그 제안은 19세기 들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나갔다.

케틀레(Adolphe Quetelet, 1796-1874)였다.

- 7) 대략적으로 표현하자면, “정치, 종교, 도덕, 학문, 사상, 양심 등의 영역에서 의견이 다를 때 논쟁은 하되 물리적 폭력에 호소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이념”(홍세화, 1995)을 말한다.

프랑스 혁명 전야의 계몽주의 시대에는 로크의 사상적 토대 위에서 도덕과학의 개념이 발생하였는데, 이때의 도덕과학(science morale)이란 사회와 개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이란 뜻이었다. 당시 도덕과학의 대표 주자는 수학자이자 프랑스혁명사상가 중의 한 사람이었던 콩도르세(Marquis de Condorcet, 1743-1794)였다. 콩도르세는 과학과 이성에 의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정치체제를 꿈꾸었다. 콩도르세에게 있어 도덕과학⁸⁾의 두 가지의 커다란 방법론은 역사학과 더불어 통계와 확률이론이었다. 콩도르세는 인간 정신의 무한한 진보에 관한 낙관적인 믿음을 자코뱅파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도피생활을 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콩도르세가 가진 진보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이성이 그 자체로 완벽하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기보다는 인간이 지닌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대신 경험(데이터)의 축적을 전제로 한 도덕과학 혹은 사회수학에 의해 그 오류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신념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한 신념은 결정론에 기초한 것이기보다는 확률론과 통계적 규칙성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⁹⁾ 콩도르세는 수집한 수치자료에 확률론적 분석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것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그런 확률론적 도덕과학에 입각하여, 사회현상의 규칙성을 토대로 한 합리적 계산을 통해 현실의 정치·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국가의 정책을 기획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이상이었다. 그 중국은 잔혹한 물리적 정치투쟁으로부터 객관성을 추구하는 과학적 탐구의 경쟁으로의 점차적인 전환을 통해 폭력과 폭정의 세계가 아닌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일 것이다.

인구 통계 등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규칙성은 콩도르세의 사회수학에서 정책 결정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자료였다. 다만, 당시는 통계적 법칙이라는 개념을 성립시킬 정도에 이르기에는 각종 경험적 수치자료의 축적이 여전히 충분치 못했던 시대였다.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문제 해결의 수준

8) 수학자였던 콩도르세는 도덕과학을 사회수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9) “수리과학에서는 확실성이란 곧 진정한 확률이 수학적으로 표현된 것이며, 이 외에 다른 유형의 확실성이란 존재할 수 없다.(중략)... 물리적 현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덕과학에서도, 사실에의 부합 정도를 나타내는 유형의 확실성이 도출되는 것은 관측 사실들이 이루는 어느 정도 일정한 질서로부터이다”(Condorcet, Selected Writings, Hacking, 1990, 정혜경 역, 2012: 95, 재인용).

에서 콩도르세는 투표행위를 통한 의사결정의 문제, 형사재판에서 적절한 배심원의 수와 다수결 혹은 만장일치의 문제, 뒤빌라르(E-Étienne Duvillard, 1775-1832)가 계획한 국립생명보험¹⁰⁾ 구상 등에 대한 이론적 수준에서의 확률론적 검토를 수행한 바 있다. 그것들은 모두 현실적인 정책적 판단과 관련된 것들이었고, 그가 지향한 도덕과학 혹은 사회수학의 예¹¹⁾들이었다. 요컨대, “콩도르세는 확률이라는 새로운 과학을 의결 과정이라는 현실에 적용하고자 했던 사람”(Cohen, B., 2004, 김명남 역, 2005: 140)이었다. 콩도르세의 사회수학적 비전은 프랑스에 중앙통계국을 세우려는 시도를 했던 뒤빌라르 뿐만 아니라 라플라스(Marquis de Laplace, 1749-1827), 푸아송(Simeon-Denis Poisson, 1781-1840)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력은 케틀레(Adolphe Quetelet, 1796-1874), 뒤르켐(Émile Durkheim, 1858-1917), 피어슨(Karl Pearson, 1857-1936)에게까지 면면히 이어졌다.

IV. 콩도르세, 라플라스, 푸아송의 배심원 수 및 평결 규칙에 관한 확률이론

통계와 확률이론이 사법적인 문제의 해결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는 아마도 콩도르세의 배심원 수 및 평결 규칙에 대한 확률론적 숙고와 그의 결론에 대한 실제 적용(1790)일 것이다.

콩도르세는 1785년 사법적 문제에 확률론을 적용하여 고민한 바 있는데, 이는 어느 정도의 배심원의 수가 적절하며 몇 명의 배심원이 유죄를 인정해야 적절한 결정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은 프랑스도 조만간 영국처럼 의회제도(입법)와 배심원제도(사법)를 도입하게 될 것임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 과정에서 콩도르세는 12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리는 영국의 배심원제도가

10) 혁명기 공화정의 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가 생명연금을 팔아 자금을 모으는 것과 관련된 일이었다.

11) 추가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덧붙일 수 있겠다. “어떤 지방에서 사망률 조건표의 작성, 선거양식의 유·불리함의 계산, 사물의 운수를 평가하며, 해상보험율을 결정하는 원리를 찾게 한다. 그리고 종신연금과 생명보험을 다룰 때, 기후와 관습과 직업이 인간수명에 끼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도록 하고, 신용의 동기를 측정하고 그에 따르는 확률을 계산, 통계 또는 결정한다”(장세룡, 1999: 126).

과연 적절한지,¹²⁾ 즉 실제 유죄 여부와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이 어느 정도 일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숙고하였다. 만약 12명이 모두 합의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아서 유죄 평결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거나 혹은 억지로 만장일치를 만들기 위해 배심원 일부를 기권시키게 만든다면 죄에 합당한 벌을 제대로 내리지 못해 사법 정의가 훼손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단순 다수결 평결에 의지하게 된다면 유죄가 아닌 것을 유죄로 잘못 판단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길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또는 만장일치제를 고수할 경우, 배심원의 수가 너무 크면 전자의 문제가 생기고, 배심원의 수가 너무 적으면 후자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콩도르세의 결론은, 30명의 배심원단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하였으나, 12명의 배심원을 유지할 경우 10:2의 다수결 투표로 결정되는 유죄 선고가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았다. 대신 그러한 결정에도 잘못된 유죄 평결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콩도르세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콩도르세가 그 이론을 제시했을 당시 프랑스에는 아직 배심원단이 없었고 그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축적된 것이 없었다. 실제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한 계산은 라플라스와 푸아송의 몫이 되었다.

콩도르세의 배심원단 확률론에 큰 관심을 가졌던 라플라스는 프랑스에서의 배심원제도 시행 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되었던 시기인 1815년에 새로운 계산을 시도하였다. 그 배경에는 1790년 이후 잠깐 동안 적용되었던 콩도르세의 평결 규칙이 현실 수준에 맞춰 계속적인 수정을 거치면서 1808년에 몇 가지 조건을 단 단순 다수결 규칙으로 정착되었다는 사실이 있었다.¹³⁾ 라플라스는 유죄 확률을 $1/2$, n 명의 배심원단이 만장일치 평결을 했을 때 신뢰도를 $(1/2)^{n+1}$ 등으로 계산¹⁴⁾하면서 1815년에 다음과 같은 오십 확률표를 작성하였다.

12) “콩도르세는 잉글랜드식 위신을 채택하느니 차라리 만장일치의 평결이 불가능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다”(Hacking, 1990, 정혜경 역, 2012: 187).

13) 배심원 평결의 단순 다수결로 바뀐 것은 당시 치안 불안과 연관이 있다.

14) 표결이 $i:n-i$ 로 나뉜 배심원단의 결론이 옳을 확률을 라플라스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하였다 (Hacking, 1984: 191-212).

$$\text{Probability}(\text{Correct}/i:n-i) = \frac{1}{2^{n-1}} \sum_{j=0}^{j=n-1} \frac{(n-1)!}{(n-1)!(n+1-j)!}$$

배심원단 투표 결과	오심 확률
12:0	1/8192
9:3	약 1/22
8:4	약 1/8
7:5	2/7
9:0	1/1024

출처 : Hacking, 1990, 정혜경 역, 2012: 191

라플라스의 계산에 따르면, 단순 다수결 규칙으로 인해 만일 7:5의 투표 결과가 나와서 유죄를 선고한다면, 무죄 확률이 2/7라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라플라스는 1808년 이래의 단순 다수결 규칙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라플라스는 12명 만장일치가 무죄 피고인이 누명을 쓰게 될 확률을 확실히 낮추긴 할 것이나, 콩도르세가 염려했던 유죄자의 무죄 판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고려하였고, 결국 배심원 9명 만장일치제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라플라스의 계산은 부분적인 수준에서 실제 정책에도 활용되어 1831년 제정된 법에서는 7:5 다수결 평결 대신 8:4 다수결 평결 규칙이 마련되었고 이는 1835년까지 유지되었다. 하지만, 당시 라플라스에겐 유죄 판결률에 관한 실질적인 경험적 수치자료가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라플라스의 제자인 푸아송이 배심원 평결 규칙과 관련된 새로운 확률이론을 제시했던 시기인 1837년경에는 프랑스 배심원제의 다양한 실험 경험의 축적과 더불어 비교적 장시간 축적된 사법통계 데이터가 존재하였다. 1826년부터 프랑스 법무부가 재판과 유죄 선고에 대한 통계자료집을 매년 발간했기 때문이다. 그 자료들을 토대로 푸아송은 배심원단의 7:5 투표로 인한 평결 사례가 전체의 7%에 불과하다는 추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 푸아송은 라플라스가 계산했던 오심 확률이 크게 과장된 수치라는 판단을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은 1835년에 프랑스의 배심원 평결 규칙이 다시 단순 다수결로 회귀한 정책적 결정을 이론적으로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푸아송의 계산은 훗날인 1967년 미국 대법원에서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 배심원 평결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데에도(Gelfand &

Solomon, 1973, 1974), 같은 해 잉글랜드에서의 10:2 다수결 유죄 평결 허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푸아송의 계산과 콩도르세나 라플라스의 계산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실제로 수집된 경험적 통계자료의 존재 유무이다. 경험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콩도르세와 라플라스는 여러 가지 선험적 가정이나 전제를 토대로 이론을 전개해야만 했던 것에 비해, 푸아송은 실제 다년간 축적된 형사사법통계자료를 토대로 그 자료들의 규칙성을 파악해 가면서 그의 이론을 전개해 나갔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축적된 통계자료가 없을 경우, 확률이론의 전제는 베르누이 시행(Bernoulli trial)을 따르게 된다. 베르누이 시행은 가령 똑같은 조건을 가진 똑같은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것과 같다. 하지만, 매번 각각 다른 조건을 가진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진다면 그 경우는 베르누이 시행과는 다를 것이다. 대신 푸아송은 매번 다른 주사위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이 많아질 경우(시행 횟수 혹은 표본이 증가할 경우)엔 일정한 규칙성이 발견됨을 알아차렸다. 푸아송은 경험적 자료를 통해 그것이 지니고 있는 통계적 안정성을 토대로 선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분포를 만들었던 것이다.

V. 통계적 법칙 개념의 대두와 범죄통계의 발전: 근대 범죄학의 탄생

배심원 평결 규칙에 관한 푸아송의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재판 및 배심원 평결 등에 관한 형사사법통계 관련 정보들이 정기적으로 수집되어 축적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축적된 자료들은 통계적 규칙성 발견에 기여하였고, 통계적 규칙성의 발견은 다시 확률이론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확률이론의 발전은 역으로 더 세분화된 더 많은 통계자료의 축적 욕구를 촉진하였다. 또한, 자료가 방대해질수록 확률이론의 도움이 더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19세기 유럽은 미증유의 수준으로 통계자료가 넘쳐났던 시대였다. 이는 17~18세기의 상황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17세기에도 이미 몇몇 나라에서 통계수치자료

의 정책 활용에 관한 구상을 가지고 있었고 18세기엔 통계집계 기관이 당시 막 출현하고 있던 근대국가 성립과 유지의 필수요건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이긴 하나, 17~18세기의 국가통계는 경쟁 국가에 그 자료들이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이 국가에 의해 독점되고 소수 엘리트들을 제외하고는 좀처럼 널리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19세기(19세기의 초반부터)는 그야말로 “활자화된 숫자들의 쇄도(avalanche of printed numbers, Hacking, 1990, 정혜경 역, 2012: 24)”를 목격한 시대였다. 17~18세기와 다른 19세기 정기적 대량 통계의 출현은 계몽주의와 프랑스혁명, 그리고 도덕과학의 이상, 즉 수집된 자료의 규칙성 발견을 토대로 한 합리적 정책 판단과 그에 기반한 사회개혁의 열망이 추동해낸 결과이기도 하였다.

19세기 초반 통계의 범람은 범죄와 사법통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결과로 1830년 무렵 이후로 범죄와 자살의 성별·지역별 특성 등 무수한 요인들과 관련된 수많은 통계적 규칙성이 관찰되기에 이르렀다. 그 같은 토양 속에서 푸아송의 배심원단 평결 규칙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 1820-1895)의 잉글랜드-웨일즈 재판 피의자수 통계의 증가(1805-1842)에 관한 보고(Engels, [1845] 1968), 체자레 롬브로조(Cesare Lombroso, 1835-1909)의 실증적 범죄자 연구(Lombroso, 1876(to 1897), Gibson & Rafter, 2006, 이경재 역, 2010), 에밀 뒤르캄(Émile Durkheim, 1858-1917)의 자살 연구(Durkheim, 1897, 황보종우 역, 2008)가 가능해졌던 것이다.

그러한 19세기를 거치면서 통계는 18세기 프로이센식의 수치 및 표의 나열이 아니라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을 찾아내는 수단이 되었다. 19세기에는 이른바 확률론과 결합된 통계적 법칙이란 개념이 출현하였다. 활자화된 숫자의 쇄도와 함께 곳곳에서 통계적 규칙성이 발견되었고, 그러한 규칙들은 반복되어 확인되었다. 18세기 후반의 프랑스 통계에서도 이미 이혼과 살인사건과 같은 일탈행위들의 발생 비율이 일정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19세기에 들어서는 케틀레(Adolphe Quetelet, 1796-1874)와 게리(André-Michel Guerry, 1802-1866)가 19세기 초반에 축적된 통계자료¹⁵⁾에서 나타나는 자살과 범죄의 규칙성¹⁶⁾을 거듭 확인하였다. 그

15) 앞서 언급한 푸아송이 연구 자료로 활용했던 자료들, 즉 프랑스 법무부가 1826년 이후 정기적으로

중에서도 특히 케틀레는 그러한 규칙성의 발견을 토대로 하여 범죄가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즉 사회가 범죄율을 결정하며 범죄자는 그 도구일 뿐이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비록 구체적인 원인 진단이 다르기는 하나, 범죄의 원인이 인간의 자유 의지를 넘어서는 곳에 존재한다는 케틀레의 발상은 이탈리아의 실증주의 범죄학자 롬브로소뿐만 아니라 이후 자살의 사회적 요인을 강조한 뒤르캄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만하다. 이는 범죄학 혹은 범죄사회학의 초창기 역사이기도 하다. 현 시점에서 재평가한 당시 이론들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법칙 추구적인 근대 실증 범죄학의 탄생은 측정과 수치가 입법과 정책수립의 경험적 근거이자 수단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었다. 즉 콩도르세가 품었던 도덕과학 혹은 사회수학의 이상이 현실화된 것이었다.

근대 범죄학은 한편으로 19세기 초반의 활자화된 통계수치의 범람이 범죄와 형사사법통계에서의 통계적 법칙에 대한 개념의 발견으로 이어지는 과정 자체에서 탄생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확률통계이론의 발전 및 그 보편화 과정의 부산물로서 탄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근대적 확률-통계이론은 정상(normalcy) 또는 표준(norm) 혹은 평균(mean) 개념을 토대로 성립된다. 정상 개념은 필연적으로 이탈(deviation, 또는 편차) 혹은 병리 개념을 낳을 수밖에 없다. 정상 개념은 18세기 계몽시대의 인간 본성(human nature)에 대한 관심을 거쳐 19세기의 정상인(normal people)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해 나아갔다. 케틀레가 만들어낸 용어인 평균적인 인간(l'homme moyen)이란 개념 역시 19세기의 사회현상에 대한 수치 분석법이 횡행한 후에야 탄생한 개념이었다(Cohen, B., 2004, 김명남 역, 2005: 152.). 정

축적인 수치자료들을 토대로 조세프 푸리에(Jean Baptiste Joseph Fourier, 1768-1830)가 『범죄 처벌 행정에 관한 기록』이라는 제목의 통계출판물을 발간하였는데, 그것을 토대로 케틀레와 게리가 재분석을 하였던 것이다(Cohen, B., 2004, 김명남 역, 2005: 142-144.).

- 16) 게리와 케틀레가 발견한 규칙성은 범죄율의 시간적-공간적 일정성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발견은 실은 대략 5-6년 치의 자료에 토대한 것이었다. 현 시대의 범죄통계를 보더라도 서로 인접한 연도의 범죄통계수치의 분포는 놀라운 만치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발견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엥겔스의 저술(Engels, [1845] 1968: 146)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수십 년 치(1805-1842 사이의 잉글랜드-웨일즈 형사사법통계)의 형사사법통계를 관찰하면 범죄율이 변동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케틀레가 그러한 변동의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케틀레가 발견한 것은 범죄율의 영원한 불변성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사회적 조건 내에서의 범죄분포의 통계적 일관성이다. 즉 사회적 환경과 조건이 변동한다면 범죄분포도 달라질 수 있다. 젊은 시절 개혁주의자이기도 했던 케틀레는 통계적 법칙이 적용되는 조건의 변화 역시 염두에 두었다.

상상태, 정상인 혹은 평균적인 인간이라는 개념의 등장은 그와 동시에 인간 본성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관심의 증대, 그리고 결국 비정상인, 예를 들어, 범죄자, 정신병자, 자살(기도)자, 장애인 등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정확히 짝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근대 범죄학은 그 자체로 정상과 비정상의 개념을 중심으로 성립된 것이다. 롬브로조의 범죄인류학, 뒤르캄¹⁷⁾의 자살이론, 1930년대 미국의 시카고학파의 사회문제론적 사회학이론들은 모두 정상과 비정상의 개념을 전제로 한 사회병리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자면, 근대적 확률-통계론이 없었다면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오늘날과 같은 관심도 없었을 것이다.

Ⅵ. 20세기 이후 오늘날의 형사사법통계

20세기 이후 오늘날의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가 19세기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터이지만, 다음에 인용한 19세기 초반의 범죄분류 방식을 보면 현재의 범죄통계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인범죄) - 칼로 베거나 폭행하는 것, 살인, 암살, 폭동, 강간 및 강간미수, 아동 강간, 유아살해, 위증 및 뇌물증여,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폭행, 독살, 범죄 공모, 아동에 대한 범죄, 존속살인, 낙태, 중혼, 법정 및 공무원 모독, 구걸, 정치범죄, 협박, 탈옥, 위생법 위반, 거세, 민사소송에서의 위증, 풍기문란, 재산몰수, 노예 거래.

(재산범죄) - 강도, 주거침입강도, 사기범죄, 상업문서 위조, 고속도로에서의 강도, 사기성 파산, 건물 방화, 신성모독, 거짓말을 동반한 사기 행위, 동전 위조, 강제 징수 및 매수, 서명 강요, 동산 또는 부동산 파괴, 곡물의 약탈 및 파괴, 물건 방화, 봉인 위조, 가구 약탈 및 파괴, 권리증서 억압, 은행권 위조, 공금 횡령, 밀수, 봉인된 물건의 무단 개봉, 키잡이의 태만으로 선박을 잃는 것, 선장의 불법행위, 백지 수표 남용.” (게리와 케틀레가 재분석한 조세프 푸리에의 『범죄 처벌 행정에 관한 기록』에서의 범죄분류 방식, Cohen, B., 2004, 김명남 역, 2005: 142-143.에서 재인용.)

위에서 인용한 범죄분류 방식은 현 시점에서 보면 대단히 어색하고 이상한 방식

17) 뒤르캄의 경우, 1894년 이후의 그의 관점에서 볼 때, 규칙 위반으로서의 범죄 그 자체는 사회에 기능적이며 정상적이라고 보면서도 범죄율의 증가는 병리 상태라고 보는 관점을 취하였다.

으로 보이지만, 이는 당시 범죄 발생 순서에 따른 분류였다. 아무튼 이 같은 어색한 분류방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정비되어 나갔는지는 앞서 언급했던 게리(Guerry)의 자살통계 데이터 수집을 위한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1820년대 무렵부터 프랑스 법무부는 자살통계를 내기는 하였지만 1836년 이전까지는 자살자의 연령과 성별조차 기록하지 않았었다. 범죄뿐만 아니라 자살의 통계적 법칙에도 집착하였던 게리는 그런 법무부를 설득하여 자살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자살통계원표를 작성하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그 때부터 자살자의 성별과 연령, 직업, 거주지, 혼인여부, 경제적 처지, 종교 등이 자살통계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Hacking, 1990, 정혜경 역, 2012: 168). 1897년에 출간된 뒤르캤의 『자살론』에 나오는 종교(카톨릭-프로테스탄트)별 자살율, 혼인여부(미혼-기혼)별 자살율의 체계적 차이에 대한 발견은 게리가 했던 것과 같은 노력들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편, 게리는 자신의 연구를 ‘비교통계학’이라고 칭하였다. 17~18세기 근대적 통계에는 그 태생부터 국가 간 비교목적이 내재되어 있었고, 게리가 살았던 시대엔 런던과 파리의 자살률 비교 작업이 진행되기도 하였던 차였다. 그 같은 비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서로 비교되는 통계적 범주의 기준이 같거나 적어도 유사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꼭 게리의 기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교통계를 목적으로 삼는다면 통계분류의 표준화를 지향하는 끊임없는 욕구의 발생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현대적 수준의 통계적 범주들의 정비는 그러한 욕구의 수로를 따라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욕구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 중요한 사례 중의 하나로, 2009년 이래 UN통계국(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과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협업으로 각국의 형사사법통계자료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통계적 목적의 국제 범죄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s for Statistical Purpose, ICCS)’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들어볼 수 있다(United Nations, 2013; UNSD & UNODC, 2013, UNODC, 2014). 국제 표준 범죄분류 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성공을 거두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¹⁸⁾ 그러한 시도가 계몽주의 시대의 쿤도르세적 이상과 19세

18) 법률보다는 범죄행위를 기준으로 국제 표준 범죄 분류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 사회통계론적 야심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현시대의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는 19세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방대하고 상대적인 수준에서 훨씬 더 정밀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웬만한 나라에서는 범죄통계의 입력단계부터 전산화되어 있고, 축적된 자료들은 대형 컴퓨터에 저장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형사사법기관이 생산하는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자료에 대한 열광은 유럽의 19세기보다도 오히려 낮아진 측면이 없지 않다. 그 중요한 이유는 국가공식범죄통계가 가진 몇 가지 치명적인 약점으로 설명된다. 그 약점은 이미 19세기 케틀레가 감지하기도 했던 것으로(Sparks et al, 1977), 이는 모든 범죄가 신고되거나 접수되어 처리되지는 않으며(Sutherland & Cressey, [1924] 1947; 김준호·이동원, 1991), 심지어 사법기관의 제급성으로 인한 편파성도 가지고 있다는 문제(Quinney, 1975), 즉 범죄암수의 문제이다.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세기에는 범죄현상을 연구함에 있어 범죄피해조사(Crime Victim Survey)를 비롯한 각종 조사통계자료나 실험통계자료 및 질적 자료들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도 공식적인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자료가 가진 방대함을 능가하는 조사통계자료는 없다. 여러 가지 변화하는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범죄암수는 과거보다 점점 낮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황지태, 2009), 상대적으로 암수가 적은 범죄군들에 대한 공식범죄통계자료는 현재에도 활용할만한 가치가 높다. 설령 범죄암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고 하더라도, 공식범죄통계에 입력되는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유의미할 수 있다. 그 표본이 다른 어떤 조사자료보다도 크기 때문에 이른바 ‘통계적 법칙’을 찾아내는 데에는 공식통계가 가장 유리하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의 활용을 위한 기타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직 갖춰지지 못했을 뿐이다.

각 나라들 사이의 형법체계의 차이, 더 나아가 각 나라의 독특한 통계 입력 규칙의 차이 등 수많은 난점들로 인해 그 같은 야심이 완벽하게 혹은 만족스럽게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VII. 형사사법통계에 대한 정책적 활용의 현재와 미래

통계의 정책적 활용의 역사, 그리고 그 일부분으로서의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의 역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 시도의 역사이자 그러한 시도들이 무수히 실패해왔던 역사이기도 하다. 즉 장구한 세월에 걸친 시행착오의 역사이다. 그와 동시에 그 역사는 세계 속의 수많은 우연을 길들여(taming the chance¹⁹) 과학의 영역으로 포섭해 온 역사이기도 하다. 이는 통계를 통해 모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겠다는 결정론 혹은 환원론이 승리해 온 역사가 아니라 통계의 발전과 더불어 오히려 비결정적이고 비환원적인 우연의 영역을 더 크게 인정해 나가는 역사이다. 통계를 통해 규칙성과 법칙을 아무리 많이 발견해 낸다고 하더라도 우연의 영역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통계를 통해 얻는 것은 끊임없는 귀납적 성찰이다.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 확률통계를 판단의 수단으로 삼는 것의 의미는 이렇다. 인간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시도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주로 의존하는 것은 축적된 지식이다. 하지만, 지식은 늘 과거형이다. 이에 비해, 미래는 어느 정도까지는 과거를 닮아있지만 더 많은 부분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것이기 마련이다. 확률적 판단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부분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늘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관심 분야에서 축적되고 습득된 지식과 정보의 양이 많을 경우(통계적으로 표현하자면, 표본이 증가할 경우) 예측실패의 확률을 줄이고 예측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 오류를 줄이려고 노력하되, 그 오류를 감수하는 것이 확률적 판단의 논리이다. 이는 넓은 의미로 해석한 공리주의적 판단과도 유사한데, 가급적 큰 득을 얻고 그 대가로 얻는 작은 실은 감수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상적 수준의 최선이기 때문이기 아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더 이상의 최선을 취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선택하는 차선이다. 개인 차원의 판단이라면 반드시 그러한 판단을 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집합적 차원의, 특히 국가 정책적 차원의 판단이라면 그런 식의 판단보다 더 좋은 판단을 찾기도 쉽지 않다. 단, 그 경우, 그런

19) 캐나다의 과학철학자이자 분석철학자인 이언 해킹(Ian Hacking, 1936-현재)의 저서명(*The Taming of Chance*, 1990)이기도 하다.

판단에 입각하여 세워진 특정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은 필수일 것이다. 뒤늦게라도 큰 오류가 발견된다면 수정할 각오도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 역시 확률적 판단의 논리에 포함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증거에 기반한 정책수립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은 앞서 살펴보았던 유럽의 17~19세기적 상황과 닮은 점이 있어 보인다. 그 닮은 점이란 한편으로는 잠재적·현재적 갈등이 증폭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그 갈등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한 정책을 통해 완화시키려는 욕구가 증대되는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확대로 계층간 격차가 커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적·인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불만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실패는 혁명의 세기였던 19세기처럼 잦은 혁명적 정권교체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세계적 수준의 자본·노동의 이동은 18~19세기 유럽에서와 같은 모험의 증가, 엄청난 양의 새로운 지식의 증가를 수반하고 있다. 그렇게 커지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에 비례하여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욕구 역시 커지는 것이다. 형사사법과 형사정책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적 갈등과 불확실성은 사회의 전 분야로 파급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형사정책 분야에서도 가급적이면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고자 노력하면서 물리적 갈등의 가능성을 과학적 검증 경쟁으로 전환하여 완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객관적 근거로 선호되는 통계자료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배경이라고 본다.

그러나 통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통계자료가 곧바로 효과적인 정책활용 가능한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통계의 역사를 돌아보면, 통계가 효과적인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것 못지않게 정책적 필요가 통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왔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사망률에 관한 통계자료들은 생명보험 구상의 단서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프랑스 혁명기 재정확충을 위한 국립생명보험 구상은 생명보험과 관련된 확률이론을 획기적으로 정교화시킴과 동시에 사망률을 계산할 수 있는 인구통계를 크게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구조금제도는 많은 점에서 생명보험의 논리와 닮아 있다. 생명보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망률의 규칙성과 패턴을 알 수 있게 하는 통계자료가

필수적이듯이, 피해자구조금제도를 재정 파탄 없이 시행해 나가려면 관련된 형사사법통계가 정확하고 안정되게 산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사망자가 있는 살인사건이나 중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들은 상대적으로 범죄암수가 적기²⁰⁾ 때문에, 공식통계의 일반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활용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혹시라도 사망자나 중상해자에 대한 통계를 제대로 구별해 낼 수 없게끔 통계분류가 되어 있다가나 혹은 혹시라도 그에 대한 입력을 경찰관 편의상 선택적으로 누락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어 최종적인 통계자료의 수치가 크게 부정확하게 될 경우엔, 피해자구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관련 통계의 개선과 관리에 신경을 써야만 할 것이다. 형사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통계가 범죄통계원표에서조차 없다면, 게리가 프랑스 법무부와 경찰에 요청하여 수행했던 작업처럼, 그 항목을 새로 만들 수도 있다. 통계는 그렇게 진화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화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진화해 나가는 통계에 대해 맹목적으로 신뢰한다거나 불신하는 태도는 부적절한 것이다. 필요하고 정확한 자료가 늘 준비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통계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면, 통계에게도 도움을 줘야 한다. 그 도움 중에는 통계자료의 공개 확대도 포함된다. 통계를 필요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숨겨두었던 유럽의 18세기보다 통계를 사회적으로 전면 공유하였던 19세기가 통계의 더 큰 위력을 보여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 현재까지 실시된 거의 대부분의 범죄피해조사 결과로 판단할 때, 심각한 유형의 범죄피해 신고율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피해 신고율보다 훨씬 높다고 할 만하다.

참고문헌

- 김준호·이동원, 1991, 『범죄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한성서공회, 1997,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대한성서공회.
- 장세룡, 1999, 「콩도르세의 수학적 사회과학에서의 확률과 의사결정」, 『전남사학』 제13집.
- 장세룡, 2004, 「콩도르세의 이상향 : 아틀란티스」, 『인문연구』 Vol. 45-46.
- 홍세화, 1995,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 창작과 비평사.
- 황지태, 2009, 『한국사회의 범죄증가추세에 대한 비판적 연구 : 공식통계상 범죄율 증가와 범죄피해조사상 피해율 감소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 Cohen, B. I., 2004, *The Triumph of Numbers: How Counting Shaped Modern Life*, W. W. Norton & Company, INC., 김명남 역, 2005, 『수의 승리』, 생각의나무.
- Condorcet, M., 1795, *Esquisse d'un tableau historique des progrès de l'esprit humain* (Sketch for a Historical Picture of the Progress of the Human Mind), 장세룡 역, 2002,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책세상.
- Durkheim, E., 1897, *Le Suicide* (Suicide), 황보종우 역, 2008, 『에밀 뒤르케임의 자살론』, 청아출판사.
- Engles, F., [1845] 1968, *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 translated by Henderson W. O. & W. H. Chaloner, Stanford Univ. Press.
- Gelfand, A. & H. Solomon, 1973, 'A Study of Poisson's Models for Jury Verdicts in Criminal and Civil Trial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68
- Gelfand, A. & H. Solomon, 1974, 'Modeling Jury Verdicts in the American Jury System',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69
- Graunt, J., 1662, *Natural and Political Observations Made upon the Bills of Mortality*, London: <http://www.neonatology.org/pdf/graunt.pdf>
- Hacking, I., 1981, 'Karl Pearson's History of Statistics', *British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cience* 32.

- Hacking, I., 1984, 'Historical Models for Justice: What is probably the Best Jury System?' *Epistemologia* 6: 191-212.
- Hacking, I., 1990, *The Taming of Chance*, 정혜경 역, 2012, 『우연을 길들이다: 통계는 어떻게 우연을 과학으로 만들었는가?』, 바다출판사.
- Lock, J., 1689, *Epistola de tolerantia (A letter on toleration)*, 공진성 역, 2013, 『관용에 대한 편지』, 책세상.
- Lombroso, C., [1876, *L'uomo delinquente*], trans by Gibson M. & H. Rafter, 2006, *Criminal man*, Duke Univ Press., 이경재 역, 2010, 『범죄인의 탄생』, 법문사.
- Maspero, E., 1927, *La Chine Antique*, 김선민 역, 1995, 『古代中國』, *까치東洋學* 13. 도서출판 까치.
- Pearson, K., 1975, *The History of Statistics in the 17th and 15th Centuries against the Changing Background of Intellectual Scientific and Religious Thought. Lectures Given by Karl Pearson at University College London during the Academic Years 1921-1933*, London.
- Petty, W., 1690, *Political Arithmetic*, London: Archive for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McMaster University, Canada, 1998.
<http://www.marxists.org/reference/subject/economics/petty/>
- Quinney, R., 1975, *Criminology: Analysis and Critique of Crime in America*. Little Brown.
- Sparks, R. F., Hazel, G. G. & D. Dodd, 1977, *Surveying Victims : A Study of the Measurement of Criminal Victimization, Perceptions of Crime and Attitude to Criminal Justice*, John Wiley & Sons Inc.
- Sutherland, H. E. & D. R. Cressey, 1947 [1924, 1st edition], *Principles of Criminology*, 4th eds. Chicago: J. B. Lippincott Company.
- United Nations, 2013, 'Report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Geography of Mexico and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on a road map to improve the quality and availability of crime statistic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tatistical

Commission Forty-fourth session.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 UNODC, 2013, 'Report of the Expert Group Meeting on Crime Statistics held in Vienna from 4-6 February 2013'.

UNODC, 2014,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s for Statistical Purposes : Results of the Homicide Questionnaire Testing', Draft.

Looking Back the History of Government's Policy Using Crime Statistics

Hwang, Ji Tae

Construing and using official statistics as a basis of policy has been a long process that gradually had reduced fallacies by critiques and refutation. If we could not understand the process, the credit for statistical data someday might turn to the discredi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flect the what the meaning of using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as a basis of policy by looking back the history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 Key words: Crime, Crime Statistics, History of Crime Statistics, Criminal Policy, Condorcet